



PART 1

1.	권두시	04	į
----	-----	----	---

- 이헌승 _ 국회의원(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 서명교 _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PART2

2. 협회소식06
3. SPECIAL,01 - 소통하는 문화공간 ······10
4. SPECIAL.02 - 부산의 명소·····12
5.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14
6. SPECIAL.03 - 건강지킴이······20
7. 신기술 소개22
8. SPECIAL.04 - 쉬어가는 유머······26



PART3

9. 전문건설인의 삶 28 • 건삶인 17호 김경식 _ ㈜성덕건설 대표이사 • 건삶인 18호 김문곤 _ 신우개발 대표
10. SPECIAL.05 - 이달의 경영어록 ·····32
11. SPECIAL.06 - (주)YTN 복지혜택몰 안내 ······33
12. 건설산업정보 - Part.1 ······34
13. SPECIAL.07 - 생활 속 유용한 TIP ·····39
14. 건설산업정보 - Part.2······40
15. SPECIAL.08 -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44
16.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46
17. 회원사 질의·응답······48
18. SPECIAL,09 -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 ······50
19. 특별기고 - 조승구 동명대학교 교수 ··········52 • 전문건설인과 건축 : 전문화·특성화를 위하여
20. SPECIAL.10 - 그것이 알고 싶다 ·····54 • 하도급 분쟁 해법
21. SPECIAL.11 - 김영란법 시행 관련 Q&A······56
PART4
22. 회원사 현황······58
23. 건설현장 산업재해 업무처리 매뉴얼60
24. SPECIAL,12 - 미래산업을 바꿀 혁신기술······63 • 제7편 증강현실
25. 건설업자의 책무·····64
26. SPECIAL.13 - 업무단신+4/4분기 주요일정…65
27. 회원사 참여 마당66
28. 불공정행위 신고안내67

01 권두사 MESSAGE

message

전문건설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통의 장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헌 승 국회의원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부산진구을 국회의원 이헌승입니다.

먼저 회원사의 권익증진,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신기술신공법 소개 등 전문 건설인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코스카레터 제10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지역의 경제성장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김병철 회장님과 1,800여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국내 SOC산업의 위축, 지역업체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기업환경 등으로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비마다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소통 및 상생협력과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는 기업가정신을 통해 충분히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협회를 중심으로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건설시장 개척 등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중장 기적으로 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저희 정치권에서도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덜어드리기 위해 불합리한 법과 제도의 개선점을 파악해 정책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소속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 분야의 일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법과 제도 관련 개선사항을 건의해 주시면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코스카레터 제10호 발간을 축하드리면서 전문건설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통의 장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전문건설인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1 권두사 MESSAGE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계절처럼 쉬지 않고 이어온 「코스카레터」의 열 번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이는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과소통을 위한 김병철 부산광역시회 회장님을 비롯한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열정으로 이룬 결실로서 진심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지난 9월 7일 설립 열 돌을 맞아 열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행사를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생윤리의 가치가 강조되는 소위 '자본주의 4.0' 흐름 속에 기술혁신으로 촉발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 이 시작되고 있고,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파리협정' 이 곧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융합건설과 녹색건설이 새로운 먹거리 건설산업으로 부상될 것임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연구원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미래건설 정책리더'라는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업계의 현안문제와함께 미래를 대응하기 위한 싱크탱크 본연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지원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과 협력소통을 위한 네트워크구축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 천연의 아름다움을 갖춘 항구도시 부산을 기반으로 건설산업의 발전이라는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코스카레터」의 성장에 우리연구원이 건설 관련 법령과 제도 안내 및 신기술·신공법 소개 등의 기고 활동을 통하여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얼마 전 영호남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제24회 부산·광주시회 합동연수회를 훌륭히 치르시기도 하셨지만 전문건설업계의 성장과 회원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를 비롯한 전문건설인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인들의 자랑스러운 쉼터 코스카레터 1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서 명 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원장



02

KOSCA NEVVS

협회 소식

❖ 제회의 및 행사



"동남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업무협약 체결식

부산시회(회장 김병철)와 동남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센터장 강헌찬)는 7월 18일(11:30 / 부산시회 사무처) 양 기관의 임원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동남권역 특성화 주제 발굴·기획, 동남권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역특화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산학연 네트워킹을 통한 고용창출, 동남권역 애로기술 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등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병철 회장은 "건설현장의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는 원가절감과 공기단축, 완벽시공을 위해 새로운 시공기술 개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선진화된 시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지정 동남권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건설교통기술 분야의 건설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전문건설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6회계연도 신규회원 간담회

부산시회는 7월 26일(11:00 / 서면 골든뷰 뷔페) 2016년 협회 회원 으로 가입한 신규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2016년 신규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병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의 각종 행사에도 함께 참여하여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건설현장의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인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협회와 함께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규 회원사들의 건설 관련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산시회에서 제작한 "전문건설업 신규회원 업무편람" 책자를 배부하고, 협회의 역할과 전문건설업자의 책무, 주요신고 및 통보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강사: 부산시회 한종석 사무처장)이 있었으며, 회원사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2016회계연도 제3차 회장단 회의

부산시회는 9월 5일(11:00 / 부산시회 회장실) 「2016회계연도 제3차회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제24회 부산·광주 대표 회원 합동연수회와 부산·광주 전문건설인 합동 조찬세미나 등 주요 행사일정을 점검하고, 부산광역시 「2016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추천대상자 선정에 관해 협의했다.

제24회 부산·광주시회 대표회원 합동 연수회 및 조찬세미나

부산시회(회장 김병철)는 영호남의 화합과 단합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협회 광주시회(회장 송성홍) 임원 및 대표회원을 부산으로 초청하여 「제24회 부산・광주시회 합동 연수회」를 9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개최했다.

첫째 날, 합동연수회 참석자들은 영도대교 도개식과 용두산 타워, 자갈치축제 현장을 둘러보았으며, 둘째 날에는 해운대 한화리조트 3층 마나롤라홀에서 재정성과연구원 배국환 원장을 초빙하여 "인문학 갈라쇼"라는 주제로 「2016년 광주·부산 전문건설인 합동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 연수회와 조찬세미나는 광주전문건설업체 임원 및 대표회원과 부산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임·직원 등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축제가 한창인 부산의 명소들을 둘러봄과 동시에 배국환 원장님의 알찬 "인문학 갈라쇼" 강의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KOSCA NEVVS

❖ 회원사 수주지원 및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국회의원 간담회



부산시회 회장단 및 운영위원 등은 7월 2일(14:00 / 최인호 국회의원 부산사무실) 국토교통위 소속 최인호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시회는 견실한 전문건설업체가 범법자로 몰리지 않도록 시공참여 자제도 대체법안(노무제공자 제도 도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과 소규모 복합공사의 대상금액 상향(4억원 미만 \Rightarrow 7억원 미만), 직접시공 의무제도 확대 반대, 건설근로자의 노임단가 현실화 등 전문건설업계의 현안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최인호 국회의원은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다"며, "전문건설업계의 현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산시회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정경진 행정부시장 간담회

부산시회 회장단은 7월 27일(10:30 / 부산광역시청 행정부시장 실) 정경진 행정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업계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부산시회는 그동안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부산전문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과 노력에 대해 부산지역 1,800여전문건설업체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하며, 부산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대형 건설공사현장에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경진 행정부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산전문건설업체, 장비·자재업체, 건설근로자의 일감확보 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보다 많은 부산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회원 소식

제24회 건설기능경기대회 개최 부산시회. 도장 및 실내건축제도 종목 입상





건설기능인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 고취와 기능수준 향상을 통한 건설공사 품질 향상 도모를 위하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우리 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4회 건설기능경기대회가 지난 9월 23일 충 북 음성 소재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1992년부터 해마다 개최되어 올해로 24회째인 이번 대회에 참가한 전체 기능인은 총 14개 종목(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조적, 철근, 타일, 배관, 전 기용접, 도장, 측량, 조경, 전산응용토목제도, 실내건축제도, 방수)에 207명 이 참가한 가운데 64명이 입상하였으며, 이 중 32명이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원사 소속 기능인으로 다시 한 번 직접시공을 전담하는 전문건설업계 기능공들의 숙련된 기술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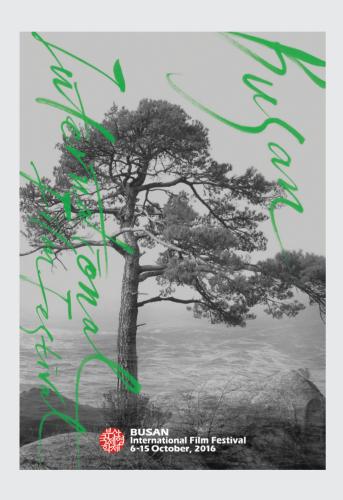
특히, 부산시회는 소속 회원사 기능공이 7명 참가한 가운데 도장 3위[이원호, 옥산건설(주)], 실내건축제도 3위[김기연, ㈜예맥]에 입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한편, 이번 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10월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리며, 각 종목별로 1위 입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과 상금 200만원, 2위~3위 입상자에게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상과 각각 상금 100만원, 70만원이 수여된다.

또 수상자 전원에게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종목의 기능사 자격이 부여되고, 10월 19일부터 21일(2박 3일)까지 해외 산업연수(일본 후쿠오카, 큐슈) 특전도 주어진다.

2016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부산시 내 5개 극장 34개 상영관에서 2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펼쳐졌다. 이번 영화제는 핸드프린팅, 마스터클래스, 오픈토크, 아주담담, 야외무대인사, 시네마투게더, BIFF 포럼 등 다양한 행사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2016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초청작 69개국 299편, 월드·인터내셔널 프리미어 122편이 소개됐다.

2 1 회 부 산 국 제 영 화 제



B U S A 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새로운 도약과 비전을 준비하는 영화제

지난 20년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향후 20년을 위한 영화제의 비전을 마련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첫 번째 영화제가 되었다. 앞으로도 세계 영화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고 아시아와 한국영화의 새로운 재능을 발굴해온 영화제의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는 영화제, 관객과의 접점을 넓혀 나가는 영화제, 그리고 산업에 기여하는 역동적인 영화제로 성장해나갈 것이다

세계 영화인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영화제

2년간의 성장통을 겪으면서 세계 영화인들과 시민들의 애정과 연대를 확인할수 있었다. 영화제에 보내온 비판과 지지들을 자양분으로 삼아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낼 것이며,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들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 특히, 허우 샤오시엔, 고레에다 히로카즈, 이창동 감독 등 아시아 3인의 거장 감독들이 한자리에 모여 특별대담 '아시아영화의 연대를 말한다'를 진행하는 등 아시아영화의 연대를 위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한국, 아시아, 중남미 영화를 아우르는 회고전과 특별기획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한국영화회고전은 한국 장르영화의 길을 열었던 이두용의 작품세계를 조망하며, 올해 작고한 이란의 거장이자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자인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특별전은 초기작에서 최근작까지 그의 작품세계를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한편 비아시아권에서는 최근세계영화계의 주목을 끌고 있는 콜롬비아영화의 역사적 궤적을 살펴보는 특별기획을 마련했다.

아시아필름마켓, 엔터테인먼트 지적 재산권 마켓의 내실화 주력

아시아필름마켓은 영화·영상을 비롯한 뉴미디어 콘텐츠 간의 경계를 넘어, 크로스오버 콘텐츠 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했다. E-IP 피칭과 북투 필름에서는 웹툰과 웹소설 등의 뉴미디어 지적재산물과 출판물을 소개하고 영상화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더불어 E-IP 법률세미나와 E-IP 투자세미나를 통해 지적재산권 비즈니스에서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포맷의 법적 보호문제와 플랫폼별 파이낸싱과 유통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소개했다.







작은 술집을 운영하는 젊은 여자 예리에겐 전신마비인 아버지가 있다. 의식이 없어서 거동을 할 수 없는 아버지를 돌보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예리. 그녀의 주변엔 이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는 청년 셋이 있다. 익준, 종빈, 정범이 그들. 세 젊은이는 예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만 셋 다 미래가 밝은 인물들은 아니다. 익준은 〈똥파리〉의 주인공처럼, 종빈은 〈용서받지 못한 자〉의 이등병처럼, 정범은 〈무산일기〉의 탈북자처럼 어딘가 치명적 결함이 있는 인물들로 보인다. 과연 셋 가운데 예리의 마음을 얻는 자가 있을까? 〈춘몽〉이라는 영화제목이 암시하듯 이 영화는 한낱 '꿈'일지 모른다. 영화란 원래꿈의 속성을 갖고 있고 꿈은 현실의 거울로 존재한다. 장률감독은 2013년 〈풍경〉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에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라는 공통 질문을 던진 적있다. 그들의 다양한 꿈을 영화를 통해 펼쳐놓을 때 스크린에 삶의 온기가 전해진다.





검은 바람(The Dark Wind)

지고지순한 사랑과 전통적 가치관, 종교관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그린 작품. 이라크의 쿠르디스탄 지역에서 저명한 배우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후세인 하싼 감독의 세 번째 장편 극영화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로 공개되는 작품이다. 이라크의 싱갈 지역에 사는 야즈디족 청년 레코는 페로와 약혼한 사이이다. 어느 날, 페로는 IS에 의해 납치되고 노예시장에 팔려간다. 레코는 천신만고 끝에 그녀를 찾아 난민캠프로 돌아오지만, 레코의 부모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페로를 배척하기 시작한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 사실까지 알려지고, 가문의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은 페로의 고통을 극단으로 몰고 간다. 그녀의 고통을 감싸는 이는 레코와 어머니뿐이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전쟁, 테러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늘 여성이다. 페로의 고통이 더 심각한 이유는, 그녀가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불안한 삶을 이어가는 마을 사람들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다. 정신적, 경제적 상실감이 그들로 하여금 페로를 더 증오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에 조성된 부산시민공원은 100년의 기다림 끝에 시민의 품에 돌아온 곳인 만큼 부산시민에게 남다른 의미를 지녔다. 부산의 심장부를 대표하는 공원으로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최첨단 공원이다. 조성 면적은 473,279㎡이며, 그중 공원 중앙지역에 자리하고 있는 하야리아 잔디광장 면적은 약 40,000㎡(축구장 6배)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편안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부산시민공원



꼭 가봐야 할 곳 사는 기 기가 >>> 부산시민공원에 왔다면 꼭 들러봐야 할 곳을 소개한다

























● 5대 숲길과 메타세콰이어 길

point. 기억(은행나무), 문화(느티나무), 즐거움 (튤립, 왕벚나무), 자연(소나무), 참여(후박나무) 라는 공원의 기본주제에 맞춘 5개 숲길과 약 300m의 메타세콰이어 길은 공원의 가장 아름 다운 볼거리다.

❷ 왕벚나무 산책길

point.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많은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부전천과 왕벚나무가 늘어선 아름 다운 산책길이다.

❸ 하야리아 잔디광장/목재조명타워

point. 하야리아 잔디광장은 축구장 6배인 40,000㎡ 면적으로 공원 중앙에 위치했다. 아시아 최초로 설치된 높이 26m의 목재조명타워는 미래를 상징하는 빛에 친환경 재료인 나무가 결합된 조명시설로 하야리아 잔디광장 둘레에 5개가 설치되어 공원의 밤을 환하게 밝혀준다.

4 기억의 숲

point. 역사의 아픈 흔적과 기억들을 안고 자란 하야리아부대 안의 플라타너스 90여 그루로 숲 길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최고의 녹음과 쉼 터를 제공하고 있다.

⑤ 기억의 기둥

point. 하이리아부대안에남아있던 나무전봇대를 재활용하여 태양광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부대의 흔적과 기억을 되새기는 공간으로 재해석하였다.

⑤ 하늘빛 폭포/거울연못

point. 높이 25m의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물로 만든 대형 분수다. 밤에는 하늘과 맞닿을 듯 솟 아 있는 분수에 다양한 색채의 조명과 레이저 쇼 를 연출하여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로정원

point. 남쪽에서 자라는 애기동백을 한국 고유의 전통 문양 형태로 심어서 길을 찾는 재미와 호기 심을 자아내는 오락형 테마정원이다.

에코브릿지와 산책길

point. 북카페 인근 연지동 방면으로 놓이는 도로 위등산객이나 동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한다.

② 전포천/도심백사장

point. 부산을 대표하는 해운대해수욕장의 정취를 부산시민공원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연출한 공간이다. 전포천의 맑은 물과 음악분수의 즐거 움을 만끽하는 휴양형 놀이공간이다.

❶ 참여의 벽

point. 시민의 벽(시민헌수자 이름이 새겨진 타일부착), 예술의 벽(대형멀티영상 장치), 매직포 토존(인공주상절리)으로 구성됐다.

① 문화 예술촌

point. 캠프하야리아 시절 하사관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건물들이 문화예술촌으로 변신하였다. 이곳은 마치 작은 마을을 연상시킨다. 5개의 공방(판화, 금속, 섬유, 도자, 목공예), 2개의 작은 공연장 겸 연습실, 2개의 작은 전시실로 구성된 문화예술촌은 시민들이 직접 문화와 예술을 체험할 수 있고 작은 전시와 공연도 할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다.

② 공원역사관

point. 캠프하야리아 당시 장교클럽을 리모델링한 공원역사관은 부산 시민공원 부지의 역사를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대한제국 말기평화로운 농토, 일제강점기 경마장과 군무원훈련소, 미군주둔기의 캠프 하야리아, 부지반환과공원 조성기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자료 제공 : 부산시설공단]

05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 폐지 건의

부산시회는 7월 14일 건설업자가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30/10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직접 시공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건설공의 직접시공 의무자체를 폐지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중앙회 경유)에 건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를 확대하기 위하여 당초 100억원 미만 대상공사에서 이를 확대하여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직접 시공 의무토록 하였으나,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건설산업의 분업화, 전문화 측면에서 역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실시공 등전문성이 부족한 종합건설업체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위장 하도급함에 따라 하도급불공정거래로부터 하도급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될 수 있어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를 폐지하여 줄것을 건의한 것이다.



건설자재 · 부재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 반대

부산시회는 7월 15일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 법 개정(안)에 대한 개정의견을 중앙회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저가의 수입산 건설자재 \cdot 부재를 국산으로 둔갑 \cdot 유통시키는 것은 수입 및 유통과정의 문제로 유통업자 또는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표기가 조작될 경우 건설업체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부산시회는 단순히 건설공사 표지 및 표지판에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를 표기하는 것이 부실자재·부재 사용을 근절시키고 공사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품질이 확보된 건설자재·부재가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수입 및 유통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건설공사 시공능력평가 시 직접시공 실적 포함 반대

부산시회는 8월 31일 국회 윤관석 의원(더민주, 인천남동구을, 국토위)이 대표 발의(2016.8.19.)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중앙회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에서는 건설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고착화되어 직접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저가 하도급 입찰 경쟁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공시함에 있어 발주자의 건설업자 선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건설산업의 직접시공을 권장하여 건설공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는 직접시공의무 확대에 대해 전문건설업 면 허제도 도입 및 건설업의 전문화·계열화 취지에 반하고, 직접시공 확대 시 직접시공 비율을 맞추기 위한 위장직영 조장 등을 이유로 직접시공의무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 시 직접시공 실적을 포함한다는 것은 적법한 하도급을 저해하고 직접시공 실적을 높이기 위한 위장직영 등의 불법을 확산시켜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건의한 것이다

❖ 공공공사 낙찰률 상향 건의

부산시회는 7월 26일 건설업체의 채산성 확보와 경영개선을 위해 공공공사의 낙찰률이 상향될 수 있도록 중앙회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했다.

최근 공공공사를 낙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행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회원 사에서는 적자시공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건설공사를 실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 공사 품에 반영된 유류대, 건설인력의 인건비 등이 낙찰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시장가격의 85% 미만으로 도급받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회원사 대부분이 하도급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 안하면 그 차이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부산시회는 전문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부실시공 근절,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공 공공사의 낙찰률이 조속히 상향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등에 건의했다.



❖ 생활권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공사 조경식재공사업 발주 건의

산림청에서는 금년 1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하며 "공동주택의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 공사"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만이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조치(행정지도)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는 지난 6월 이에 대응하여 동 행정지도 취소(철회) 및 조 경식재공사업 입찰참가를 위한 탄원서를 회원사로부터 받아 산림청에 제출한 바 있다.

그 결과, 발주자의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체도 "수목병해충 방제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산림청 질의회신을 받았으며, 이에 부산시회는 7월 26일 부산광역시 및 16개 구·군청 등 산림, 녹지, 조경 관련 발주기관에 "수목병해충 방제공사" 발주시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다.

이울러, 부산시회는 협회가 회원사 수주지원을 위해 노력한 만큼 향후 동 공사 낙찰 시 견실시공과 발주자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 등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영역 확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회원사에 당부했다.

❖ 노동관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부산시회는 8월 17일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개정의견을 중앙회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에서는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입 ▲퇴직공제금 지급받을 권리 소멸시효 연장 ▲직종·기능수준별 적정임금 고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2012년 1월 1일 이후 국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이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2012년 4월 2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되는 공공공사에 적용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표준 (안),을 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로 시달하여 기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직종·기능수준별 적정임금 고시 또한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기능수준을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노임단가는 지역별, 기능인력 수급부족 등에 따라 편차가 커 사실상 적정임금 산정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2회에 걸쳐 상·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를 조사하여 직종별 노임을 산출해 이를 건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된다.

따라서 부산시회에서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건설입 임금고시 등은 기 도입·시행되고 있으므로 임금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입과 직종·기능수준별 적정임금 고시에 대한 반대의 견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한 것이다.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의견 제출

추가공사의 추정제도 명확 명시 등 부산시회,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건의

부산시회는 8월 26일 원사업자가 추가 공사 발생에 따른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추가공사의 추정제도의 명확 명시하는 등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중앙회 경유)에 건의했다.

부산시회는 개정 의견으로 원사업자에서 추가공사가 발생되어 작업을 지시한 경우 수급사업 자가 이를 원사업자에게 위탁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지 않았을 경우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된 것으로 추정 하는 부문을 명확히 명시하여 줄 것과 원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경우로서 공사가 계약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공사 현장 자재를 매각 가능토록 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수급 사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이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건의

보증서 교부 대상금액 및 면제사유 확대 건의

부산시회는 8월 31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중앙회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부산시회는 우선 동일한 건설기계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기준을 삭제하고, 지급보증 면제대상 금액을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또 일일대여, 단기대여 등 건설기계대여대금을 즉시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을 면제해 줄 것과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보증서 미교부를 요구할 경우로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보증서 교부를 면제 가능토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HITE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산업재해예방조치 범위 확대 반대

부산시회는 9월 1일 국회 김동철 의원이 발의(2016,8,10,)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중앙회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에서는 ▲도급사업 시 원수급자가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범위를 토사 등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등 산업재해발생위험작업에서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우리 시회는 ▲건설현장에서의 유해·위험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160호, 2016.7.1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모든 작업 장소에 안전·보건조치를 하라는 것은 막대한 비용 발생과 형식적인 조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의무를 하도급업체(전문건설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현행 유지를 건의한 것이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법 또한 동일한 법 적용을 위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상정 안건 제출

부산 산단지역 민간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요청

부산시회는 9월 12일 부산지역 산단 민간공사에 부산지역 건설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명단 공개 및 부산지역 건설업체가 참여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줄 것과 발주기관에서 계약심사를 통해 예정가격이 조정되었을 경우 조정사유서 공개 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상정안건으로 제출했다.

부산지역의 경우 산업단지가 부산 중심지가 아닌 외곽 지역으로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가 인접해 있어 해당 지역의 공장 신축공사 시 타 지역건설업체가 도급 받아 자사연고지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산광역시에서 부산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사에 권장하고, 분양업체 명단을 건설단체에 제공하여 줄 것과 발주기관에서 건설공사의 계약심사를 통해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을 조정할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조정사유서를 검토할수 있도록 지방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는 있는 조정사유서 의무공개를 준수하여 줄 것을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상정안건으로 제출한 것이다.

11

1

Hi

❖ 우레탄 포장(트랙) 철거 및 마사토부설공사 발주 시 업역준수 협조

부산시회는 9월 19일 부산광역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우레탄 포장(트랙) 철거 및 마사토부설공사 발주 시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역을 준수해 토공사업으로 발주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타지역 일부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우레탄 포장(트랙) 철거 및 마사토부설공사」를 종합건설 업(토목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함에 따라 토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들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영역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관련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서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는 전문건설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마사토 부설을 위한 우레탄 포장 철거 등은 부대공사에 해당되어 토공사업으로 발주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 2016년 제2차 대형공사장 방문조사 실시

부산시회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부산시와 합동으로 지역 내 10개 대형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건설부조리 및 종합건설업체의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보다 많은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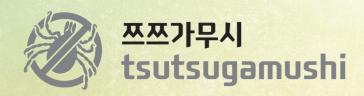
이번 실태조사에서 부산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은 평균 45.9%로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권장하고 있는 부산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율 70%에 비해 많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발주처와 종합건설사에 회원명부를 전달하고 향후 투입공종에 대한 지역업 체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하도급 계약 시 부당특약을 설정한 것이 확인되어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불법하도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 2016년 하반기 발주예정 종합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협조

부산시회는 8월 17일 부산광역시 및 산하 구·군청, 교육청 등 부산지역 주요발주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하반기 건설공사 발주계획 자료를 수집하여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발주할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회의 이번 건의는 종합건설업체의 초저가 하도급을 포함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고 실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 보호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건설공사의 완벽 시공을 위한 것이다.



어디로든 훌쩍 떠나기 좋은 기을철을 맞아 전국의 산과 들이 나들이 나은 이 어디로든 훌쩍 떠나기 좋은 기을철을 맞아 전국의 산과 들이 나들이 나은 오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도 세심한 유의가 필요하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쯔쯔가무시증'을 옮기는 털진드기 유충이 왕성히 활동하는 시기이므로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으려면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들이 가기 좋은 가을

쯔쯔가무시, 이렇게 예방하세요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쯔쯔가무시증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 가능하지만, 특히 남 서부 지역에서 서식하는 활순털진드기 등에 물려 발생한다. 최근에는 매개 진드 기의 분포지역 확대와 개체 수 증가 등으로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다.

왜 기을에 많이 발생할까?

쯔쯔기무시증은 병원체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 발생한다. 연중 산발적으로 발생하나, 여름철 산란한 털진드기 알이 초기을부터 본격적으로 부화할 때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을 섭취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털진드기 유충이 활동하는 시기인 가을(9~11월)에 매개체와의 접촉을 통해 쯔쯔기무시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털진드기의 성충이나 다른 성장단계에서는 미소 곤충류(예: 톡토기)의 알을 먹고 산다.

진드기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드기의 대부분은 인간과 동물에 부착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 흡혈한다. 무리하게 당기면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다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진드기에 물린 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병원 내원하여 진단을 받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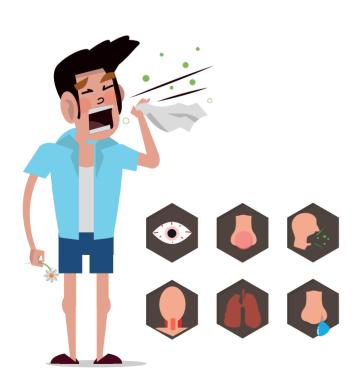
조조기무시증의 증상과 치료법

쯔쯔가무시증의 감염 후 1~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급성으로 발생하며, 두통, 발열, 오한, 구토, 발진, 근육통, 기침 등이 나타나 고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검은 딱지)가 형성된다.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비교적 용이하게 회복이 가능하므로 가을철에 위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쯔쯔가무시증은 조기 치료를 통해 완치와 사망 예방이 가능하므로 사소한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반드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TSUTSUGAMUSHI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 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작업 시에는 일상복이 아닌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고,
 소매는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가 묻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및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될 수 있음



야외 활동 후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샤워나 목욕하기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신기술 소개

조립식 판넬에 T형·H형 프레임을 적용한 외부보강형 물탱크 조립기술

● 기술개발자 : ㈜엔아이씨이(대표이사 주순화),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박규찬)

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마정1길 46(Tel. 031-608-0009)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47-9 신한빌딩601(Tel. 02-405-8114)

● 보호기간: 2014. 11. 10. ~ 2019. 11. 09.(5년)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조립식 외부보강 T프레임과 칸막이보강 H프레임을 조립식 물탱크용 판넬과 결합시켜, 외벽과 칸막이의 수 압에 저항하는 외부보강형 물탱크 조립 공법



이 신기술은 저장식수의 부식오염방지와 내진성능향상을 위한 외부보강 공법으로 물탱크 내부에 복잡한 격자형식 보강 환봉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보강 T프레임과 칸막이 H프레임을 물탱크용 판넬과 합성 조립 하여 외벽과 칸막이 수압을 효과적으로 저항하는 공법이며 물탱크 내부에 수압 저항용 금속 환봉을 제한 하여 청소 시 활동이 자유롭고 물탱크에 비축된 물의 위생적인 유지 관리가 용이한 외부 보강형 물탱크 조 립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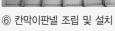


① 기초 콘크리트 패드 위에 저면 ② 저면판넬과 C찬넬 조립 판넬 배치 조립

③ 저면판넬 상부에 보온재 배열 ④ 측면판넬과 T프레임 조립 및 PE시트 열용착 시공

⑤ T프레임과 T프레임 베이스 조립 및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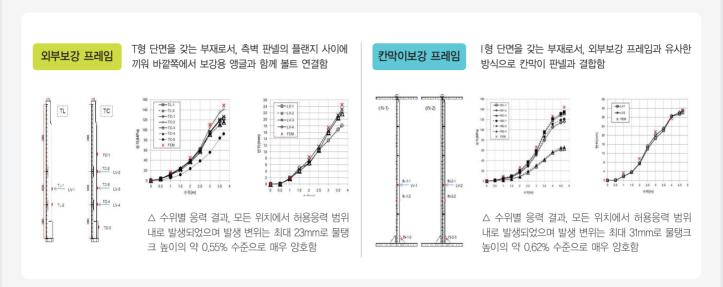


⑦ 상부판넬 조립 및 설치



⑧ 상부판넬과 천정 슬라브 연결 ⑨ 시공 완료

다. 신기술의 특성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처	공사기간
1	인도네시아 반자르마신	수자원청	2015, 07, 01, ~ 2016, 01, 12,
2	LH아파트 대전노은 3지구 A - 3 외	LH주택토지공사 외	2014, 11, 24, ~ 2015, 03, 07,
3	우산동 A1B / L현장 외 5건	(주)중흥건설 외	2014. 07. 09. ~ 2014. 08. 29. 외
4	부산신호 21022B / L현장 외 3건	(주)부영주택 외	2013, 06, 12, ~ 2013, 07, 10, 외
5	금호건설(주) 익산신동 재건축	금호건설(주)	2013, 10, 15, ~ 2013, 11, 10,
6	순천신대 A2B/L현장 외 3건	중흥토건(주) 외	2012, 10, 10, ~ 2012, 11, 15, 외

나. 향후 활용전망

일반적으로 조립식 물탱크는 각종 건설 및 공용 건축물에 식수와 생활용수를 저장하는 저수조와 각종 산업용수, 소 방 용수 확보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외적으로 물 산업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기존 물탱크 시장의 수질관리에 대한 향상된 공법 개발을 요구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에 따라 기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부 보강공법의 보강재 부식에 따른 수질 오염과 복잡한 격자환봉 설치로 청소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의 문제 점을, 신기술은 탱크 내부의 금속 환봉을 제한하여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청소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킨 공법으로 변화되고 있는 국내·외 건설시장에 부응하는 외부보강 물탱크임.

신기술 소개

보강리브와 헌치 및 파형철선 전단연결재를 이용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Rib-Deck-공법)

● 기술개발자 : (주)신원알피씨(대표이사 유동혁) 외 3개사

●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2728(Tel. 031-781-8641)

● 보호기간: 2014. 12. 22. ~ 2019. 12. 21.(5년)

1. 신기술의 내용

가. 신기술의 범위 및 내용

범위

강성 증가용 보강리브와 종 \cdot 횡방향의 구배조절용 헌치가 하면에 일체로 형성되고 파형철선 전단연결재가 상면에 설치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



이 신기술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의 하면에 보강리브가 일체로 형성되어 패널의 강성이 증가되고 증가된 패널 강성으로 긴장력 등의 도입 없이 거더 사이의 간격이 2.7m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며, 일단부 또는 양단부에 헌치를 일체로 형성하여 종·횡방향의 구배조절이 용이하고 현장타설 콘크리트 물량을 감소할 수 있으며, 파형 전단 연결재를 적용하여 현장 바닥판 철근 배근 시공성이 향상된 교량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공법이다.

나. 신기술의 시공순서







① 거더상면 고무패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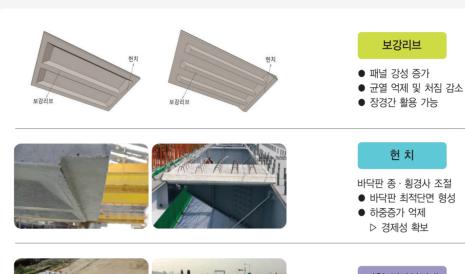
② 리브덱 설치



③ 이음부 실리콘 및 모르타르 마감

④ 현장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다. 신기술의 특성



헌 치

보강리브

바닥판 종 · 횡경사 조절

- 바닥판 최적단면 형성
- 하중증가 억제 ▷ 경제성 확보





파형 전단연결재

- 바닥판 철근배근 용이
- 공기단축 가능

2. 국내외 건설공사 활용실적 및 전망

가, 활용실적

연번	공사명	발주처	공사기간
1	수원과선교 확장연장공사中 수원과선교	(주)케이씨씨	2013.07.25. ~ 2014.04.30.
2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中 신길교	제2서해안 고속도로(주)	2011,11,29. ~ 2012,09.30.
3	평택~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中 월곶4교	제2서해안 고속도로(주)	2011,11,29, ~ 2012,09,30,

나. 향후 활용전망

2000년대 들어서 교량 바닥판 공사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공기단축이라는 목표 아래 프리캐스트 패널이 합판거 푸집 공법의 대안으로 각광 받으며 한국도로공사 및 국토교통부 산하 5개청에서 발주되는 교량에 많이 적용됨. 이 신기술은 기존의 합판 거푸집 및 동바리 공법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패널을 이용한 바닥판 공법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시공이 빠르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 공법으로 PSC교, Steel Box교, 강판형교 등 폭넓은 적용성을 가진 공법임.

최근 3년간 건설된 국내 교량 중 이 신기술의 적용이 가능한 거더교는 전체 교량 개소 중 62.5%, 전체 교량 연장 중 78.9%로 판단되어 향후 활용전망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



한 아주머니가 화장을 하다가 울기 시작했다.

남편이 깜짝 놀라서 물었다. "아니, 갑자기 왜 우는 거야?"

아주머니가 서럽게 말했다.

"내 얼굴이 쭈글쭈글해져서 서러워요.

이렇게 늙어가다니 정말 슬퍼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당신은 거울 볼 때만 당신 얼굴을 보지만 매일 보고 있는 나는 어떻겠어? 나도 있으니 참아!"







- 1. 비상<mark>금을 봉투</mark>에 넣는다.
- 2. <mark>봉</mark>투 위에 메모를 써둔다.

'여보 사랑해! 필요할 때 써! ♡'

3. 그리고 평소 <mark>마누라</mark>가 쳐다보지<mark>도 않는</mark> 고등학교 졸업앨범 같은 곳에 숨겨둔다.





변비약 광고

"확실히 싸게 해 드립니다."

영어학원 광고

<mark>"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영어만 잘하면 산다."</mark>

어떤 성형외과의 광고

"어머니 <mark>날 낳으</mark>시고 원장님 <mark>날 만</mark>드셨네."



09

건삶인 제 17호

+ 전문건설인의 삶을 누려오면서 경험했던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

신뢰를 주고 사회에 보답하는 진정한 기업인

"진정한 기업인은 신뢰를 주는 사람이며,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에 그보다 더 큰 가치로 보답하는 사람이어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정이 넉넉하다. 미소 띤 얼굴로 상대를 포용하는 자세가 몸에 뱄다. 하지만 눈매는 야무지다. 외유내강형임을 짐작하게 한다.

푸근한 이웃 아저씨 같은 김경식(59) 성덕건설 대표. 대한전문건설 협회 부산시회 부회장이자 기획혁신위원장을 맡아 지역건설업계의 미래를 야심 차게 준비 중이다.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

그는 최소 투자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 (homo economicus)' 와 다른 유형의 기업인이 틀림없다. 그가 입 버릇처럼 외치는 봉사정신과 혁신을 통한 상생, 주인의식은 이기적 인 행태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선한 사마리아 기업인' 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점에서 '호모 리시프로칸(homo reciprocan)'에 가깝다. 대응적 인간 또는 호혜적 인간이란 뜻이다. 호모 리시프로칸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으로 보복하는 경향이 있으나, 한편으로 호의로 대하고 공평하게 행동할 경우 상대방에 기꺼이 협조하는 호혜적 성향을 갖는다.



선순환적 상승 곡선을 그리는 상생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다. "진정한 기업인은 신뢰를 주는 사람이며,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에 그보다 더 큰 가치로 보답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인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장사꾼이 아니라는 얘기다. 기업의 기(企)는 사람 인(人)과 멈출 지(止)가 결합한 말. 사람이 갈길을 찾기 위해 발뒤꿈치를 들어 앞을 내다본다는 뜻이다. 경제의 앞날을 생각하고 꾀한다는 점에서 김 대표의 혁신 개념과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삼천포 출신의 그가 부산에 온 것은 1981년. "해군 병역을 마치고 나오니까 큰형님이 부르시더군요. 정신없이 건설일을 배웠죠." 그 렇게 20년을 주택건설 현장에서 뒹굴며 사업을 보는 눈과 기본기를 익혔다. "형님을 많이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실컷 일한 뒤 휴가라도 며칠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뒤처리를 잘해야 한다며 청소만 시키시더 군요. 지금 생각하니 그게 다 저를 위한 배려였는데 말입니다. 허허."

그리고 새천년 원년인 2000년 성덕건설을 세워 기업인의 길에 들어섰다. 전공도 주택건설에서 철근 콘크리트로 바꿨다. 골조공사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파악했기 때문. "인테리어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건물 뼈대는 한 번 세우면 부수지 않는한 불가능합니다. 또한 골조의 수직과 수평 구조를 정확히 시공해야 마감 공사와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고품격 시공을 전면에 내세웠고 업계에서 최상급 평가를 받았다. 정직과 성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결과다. 성 덕건설 창립 이후 지금까지 클레임 걸린 적이 없었고 사망사고 역시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최근 그는 수십억 대의 골조 공사를 맡아 진행 중이다. 국제신문의 김해 인쇄공장인 '국제프린테크'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골조사업을 내면 6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그가 붙잡고 있는 화두는 혁신. 전문건설업의 미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여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머리를 맞댄다. 주역을 보면 혁신 개념이 명확해진다.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窮即變 變即通 通即久)'.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 간다는 말이다. 궁은 갈등, 변은 해결 과정, 통은 상호 화합, 즉 상생을 뜻한다. 김 대표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야 혁신의 출발점에 설 수 있다고본다. 다시 말해 비전에 따른 방향과 목표를 정하기에 앞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위기의식과 긴박감으로 준비하는 게 먼저라는 얘기다.

"혁신은 완전히 새로운 그 무엇이거나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최고'를 학습해 이를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최고' 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혁신의 대상과 해답은 바로여기, 기존 시장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컨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생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면 그 시너지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하도급 실태를 바로 잡는 해법이 모두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궁즉변이자 변즉통이며 통즉구가 아니겠는가. 서로를 갉아먹는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 힘을 합쳐 파이(시장)를 키워나갈 비책을 마련하는 게 통즉구라 하겠다.

김 대표는 통즉구를 성덕건설에서도 실현시키기 위해 열정을 쏟는다.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주인의식. 이게 뒷받침돼야수주 확대와 경영 혁신, 튼실한 재무구조를 이룰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그래서 이번에 채용한 고졸 여직원을 야간대에 보낼 생각이란다. 사내 모든 업무를 공개하고, 결재도 컴퓨터로 해버린다. 그만큼 직원들을 믿는다. 주인의식이 '칭찬과 성과의 선순환 효과'를 발휘하고 혁신을 향한 걸음도 더욱 빨라질 거라 확신한다.

'호모 리시프로킨' 인 그는 푸근한 인상에서 읽을 수 있듯이 봉사와 나눔에도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다. 로타리와 라이온스클럽 회장을 맡으면서 결식아동과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불우이웃 돕기에 팔을 걷 어붙이고 있다. 김 대표는 리더의 전형을 보여준다.

미국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그는 멀리 바라보고 일행과 보폭을 맞춰 느리 게 걷는 사람임이 틀림없다.

글. 언론인 최원열



09

건삶인 제 18호

+ 전문건설인의 삶을 누려오면서 경험했던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



성실하게 한 길을 걸어온 건설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타인에게도 가치를 주는 치원의 '선한' 이기심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말하고 경쟁력을 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건설업계는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설회사들은 넘쳐나는데 일거리 물량은 떨어지니 당연한 겁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의 결과를 거스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문곤(62) 신우개발 대표는 사업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두루 경험한 때문 인지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오히려 건설 불황 속에서도 나 름 살아나갈 방안이 있는 것처럼 초연한 태도를 보였다.

"상대방에 신뢰를 잃지 않고, 적자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감만 맡으면 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가수주에 따른 문제가 없 고 크게 성장하지는 못해도 생존에 지장은 없어요."

그의 말은 일견 간단한 듯 보이지만 깊이가 있다. 기업철학이 상당한 경지에 오르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얘기다.

'이카루스 패러독스' 라는 말이 있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는 밀 랍으로 만든 깃털을 만들어 하늘을 훨훨 날게 됐다. 하지만 기분에 취해 너 무 높이 날아오르는 바람에 밀랍이 태양열에 녹아버렸다. 결국 이카루스 는 바다에 떨어져 죽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다. 성공에 안주하고 욕심을 부린다면 스스로 만든 덫에 걸려 망한다는 교훈을 이카루스 패러독스는 전해준다. 다시 말해 성공을 경계하라는 뜻이다.

김 대표는 이를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수십 년 전 호황기 시절 단맛에 취해 좌절한 경험이 있기에 망하지 않는 법을 체득한 것이다. 그 첫째가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경남 함양이 고향인 그는 군 제대 후 부산으로 와 자형이 하던 업체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하다 1984년 독립했다. 그 당시 건설업계는 민간아파트 신축붐과 도로, 항만 등 SOC 신규사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호황기를 맞았으며, 건설업 면허발급도 국가에서 제한하고 있을 때여서 건설회사도 매우 귀한 상태였고, 건설회사 직원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 김 대표는 당시 국제그룹 계열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2년가량 거래하면서 무서운 성장세를 탔다. 글로벌 호황기에다 국내 고도성장기 최정점에서 건설업체들은 엄청난 성공에 도취됐다. 인력은 풍부했고, 일거리도 넘쳤다. 게다가 저렴한 노임에도 생산성은 높았으니 그야말로 건설업계의 최대 호황기였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성장기와 더불어 물가가 안정돼 있었고, 치안도 확립돼 업계로선 성장 호기를 맞았죠. 이러한 시기가 지속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앞으로의 건설업계에는 이러한 시절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IMF 외환위기가 예고도 없이 몰아치면서 건설업체들의 도미노 부도사태를 불러왔다. 김 대표도 예외가 아니었다. 공사대금으로 받은 대물 부동산이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 그때 김 대표를 아는 주변의 많은 지인들의 도움으로 겨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김 대표의 인생철학을 엿볼 수 있는 장면 한 대목.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거래처를 비롯한 주위에 피해를 입혀선 안 된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마음을 비우니 오히려 홀가분합디다." 당시 그는 기업은 성장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 기업가에게 이기심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이기적 유전자' 란 말이 있듯이 인간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기본적 동기이자, 자본주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이기심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잘되는 회사 또한 철저히 이기적이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면서 타인에게도 가치를 주는 차원의 '선한' 이기심이어야 한다. 앞서 말한 '건설업체들의 호황기는 이제 지나간 것 같다'는 김 대표



의 말은 저가수주를 지칭한 것이다. 전문건설업계가 악순환되는 출발점이 저가수주 관행이라고 그는 질타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제값 받고 견실시공하는 풍토가 조속히 자리 잡아야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건설공사의 품질이 떨어지는 외주를 줄이기 위해 직영 비중을 늘리고 있다. 현장 직원 수를 확대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부실시 공은 기업의 신뢰와 직결되기에 특히 신경을 쓴다.

"1990년대만 해도 저가수주를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오히려 한 유 명그룹에서는 사업 예정가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에 가장 근접한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업계의 노임단가는 실제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노임이 정부노임단가보다 훨씬 많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니 업체 의 이윤이 쪼그라드는 것을 둘째로 하고 적자시공으로 인한 기업의 부실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임단가를 현실화해야 합니다. 정부노임단가를 적정 수준으로만 맞추면 됩니다. 너무 올릴 필요도 없어요. 생산성이 떨어지면 임금 인상률도 낮추거나 동결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시장노임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미래 성장동력을 말하고 경쟁력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점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큰 과제일 것입니다."

끝으로 김 대표는 장인정신으로 성실하게 한 길을 파라고 주문한다. 특히 "과욕을 부려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에게 제일 싫은 게 뭐냐고 묻자 "잔머리 굴리기와 기회주의"라며 단박에 대답했다.

글, 언론인 최원열



MANAGE-MENT

이달의 경영어록

"

때때로 혁신을 할 때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신속히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혁신으로 개선시켜가는 것이 최선이다.

>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 > "

(주)YTN 복지혜택몰 가입절차 및 이용 안내

※ 회원사 임·직원 모두가 가입 가능하며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부산시회 회원사가 공식사이트에 가입후 이용하게 되면, 가전제품과 패션·잡화, 영화티켓, 문화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에서 30%~40% 추가 할인 가능합니다.

01. 가입방법

① 인터넷 가입 ▶ 협회전용 인증메일 가입사이트(http://goo.gl/dehHHg) 접속 ② 모바일 가입 ▶ 카카오톡(내프로필 → 나와의 채팅) 오픈 후 http://ymall.ygoon.com 입력

02. 회원가입

이메일 인증: 본인이 평소 이용하는 이메일 주소 입력 ※ 모바일 가입 경우 이름 앞에 반드시 기업명 기재 (ex. 전문건설 홍길동)

- 03. 비밀번호 등록(영문, 숫자 포함 8자리 이상)
- 04. 로그인
- 05. 복지몰 이용



인터넷 가입 절차

(http://goo.gl/dehHHg) 접속 ▶ 회원가입 ▶ 비밀번호 등록 인적원 할인스토어의 회원이 되고 싶으신가요?





문의사항: YTN 기획사업팀 고객센터 02-398-888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국토교통부에서는 7월 4일자로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범위 확대, 안전관리비 계상 범위 확대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령 제333호, 2016.7.4.】

- 1.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한 불시현장점검 사유 확대 (제48조 제1항)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추가
 - * 시행일: 2016.7.4.부터
- 2.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범위 확대 (제49조)

가설물설치공사 추가

- * 시행일: 2016.7.1.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3. **안전관리비 계상 범위 확대** (제60조)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비용 계상 시 신호수 배치비용 추가 계상
 - 발주자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공기 연장되거나 안전관리계획 변경 시 추가 발생 안전관리비 증액 계상
 - * 시행일: 2016.7.4.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7월 19일자로 하도급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 제27367호, 2016.7.19.】

- 1. 신고자에 대한 동의 여부 확인 절차 규정 (제10조제2항 제3항)
 - 공정위는 신고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대한 동의 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을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가 공정위의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미 동 의로 간주
- **2. 피신고자에 대한 신고 사실 통지 절차 규정** (제10조 제4항)
 - 공정위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 신고접수 사실 등을 원사업자(피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 * 시행일 : 2016.7.19.부터(단, 제10조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도 적용)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7월 25일자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0호. 2016.7.25.】

1. 과징금 부과율 상향 및 정액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하도급대금의 2배 × 부과율 (3~10%)	하도급대금의 2배 × 법위반금액비율(15%) × 부과율(20~80%)
〈예시〉	하도급금액 10억원 기준	하도급금액 10억원 기준
	- 과징금 : 6천만원~2억원	- 과징금 : 6천만원~2.4억원
정액 과징금	_	기술유용, 보복조치, 부당감액 등의 경우 2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 부과율: 법위반 유형, 피해유발 정도 등으로 위반 중대성을 구분하고 중대성 정도에 따라 20~80% 범위에서 결정

2. 과징금 가중·감경기준 축소

개정내용	현행	개정안
과징금 기중 · 경감 기준	최대 50%	최대 20%

3. 복수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위반행위가 복수의 유형으로 구성된 경우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정함 * 시행일: 2016.7.25.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예규ㆍ지침ㆍ고시ㆍ통첩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에서는 8월 4일자로 계약추정제도 도입 및 인정기능사 실무경력 완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 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27440호, 2016.8.4.】

1. 계약추정제도 도입 (안 제26조의4에서 26조의6까지 신설)

- 원수급인이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두로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하 수급인은 변경된 공사의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서면 통지하고 이를 완공된 날부터 3년 간 보관하도록 함

2. 인정기능사 실무경력 완화 (별표 2 비고 제1호라목)

- 인정기능사 자격요건 중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경력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 3. **행정처분 감경(가중) 사유 명확화** (안 별표 6. 7)
 - 감경(가중)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의 계산에 있어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산점을 위반행위적발일로 구체적으로 명시
 - * 시행일: 2016,8,4,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령 제351호, 2016.8.4.】

- **1. 건설업 교육기관** (안 제10조의4제6항 신설)
 - 건설업 교육기관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기준, 강사의 자격 등 그 밖에 건설업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2. 기재사항 부족에 따른 건설업 수첩 재교부시 수수료 면제 (별표 5)
 -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란 부족으로 재교부를 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
 - * 시행일: 2016.7.4.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Rightarrow 건설법령정보 \Rightarrow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

●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27299호(2016.6.30.), 제27356호(2016.7.19.)】

- 1. 미등록 자주식 천공기(시추기 포함) 한시적 건설기계 등록 (별표 1)
 - 자주식 시추조사장비◈ 소유자는 1년 이내('17.6.30.) 건설기계 등록 반드시 필요
 - ◈ 당초 천공기(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무한궤도 장치 부착 등 개량을 통한 천공기에 해당
 - * 시행일: 2016.7.1.부터
- 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확인 (제49조)
 - 국가 등 공공기관◈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확인(월 1회 이상)
 - ◈ 국가, 지방,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 대상범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200억원 이상) 등
 - * 시행일 : 2016.7.20.부터
- 3. 자체굴절식 조향장치가 있는 4톤 미만 로더 건설기계 범위에서 제외 (별표 1)
 - * 시행일: 2016.7.20.부터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국토교통부에서는 8월 11자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명확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 제27445호. 2016.8.11.】

- **1.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명확화** (제36조 제1항, 별표4)
 -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법령 간 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내력구조부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 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일치시킴.

제36조(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이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하 "담 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 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 별표4에 따른 기간

KOREA SPECIALTY CONTRACTORS ASSOCIATION

2. 하자담보청구 제척기간 도입 (제38조)

- 하자보수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청구하도록 하여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성격을 종전의 하자발생 기간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변경함.

제38조(하자보수 절차) ①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 등(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 3. 공용부분 하자담보책임 종료확인 절차의 개선 (제39조 제6항)
 - 종전에는 입주자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공용부분 담보책임의 종료확인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5분의 1 이상의 서면반대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종료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제39조(담보책임의 종료) ⑥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호에 따른 의결을 할 수 없다.

- 1. (생략)
-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 시행일: 2016,8,12,부터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에서 9월 2일자로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 제27475호, 2016.9.2.】

- 1. 지역업체 판단기준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명확화 (제21조 제1항 제6호 제30조 제4항 제72조 제3항)
 - (현행)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개정)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
- 2. 무단 정보수집을 위해 정보시스템 등에 비인가 프로그램 설치 시 입찰참가 제한사유 추가 등 (제17조 제1항)
- 3.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및 제한사유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제76조 제10항)
 - * 시행일: 2016.9.3.부터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행정자치부에서 9월 13일자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대통령령 제27491호, 2016.9.13.】

- ▼1. 「**협상에 의한 계약」발주 대상에서 건설공사 폐지** (제43조 제1항 등)
 - 2. 입찰참가자에게 설계서 교부 의무화 (제15조 제1항)
 - **3. 지역제한 입찰 시 소재지 기준 명확화** (제20조 제1항 제6호)
 -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로 판단
 - 4. 단순착오 등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 (제92조의2 제1항 제6호)
 - 금액단위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입찰 후 계약 체결하지 못한 경우
 - * 시행일: 2016.9.13.부터

【행정자치부령 제81호, 2016.9.13.】

- 1. 신규 사업자의 지역제한 판단기준 명확화 (제25조 제4항)
 -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법인등기)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를 신설 등록 시 인정
- 2.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추가 (제13조)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
 - * 시행일: 2016.9.13.부터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건설법령정보 →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기획재정부에서 9월 23일자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령 제573호, 2016.9.23.】

- 1. 지역업체 판단기준을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로 명확히 규정 (제25조 제3항, 제33조 제2항)
 - (현행) 주된 영업소
 - (개정)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 2. 계약관련 정보 공개대상에 계약이행 관련사항 추가 (제82조)
 -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계약물량 및 규모, 계약금액, 지명경쟁 또는 수의 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입찰자별 입찰금액,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계약이행(검사 및 검수결과 등)에 관한 사항
 - * 시행일: 2016.9.23.부터
 - ※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Rightarrow 건설법령정보 \Rightarrow 최근개정법령에서 확인 가능하다.

KOREA SPECIALTY CONTRACTORS ASSOCIATION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세상입니다. 사소한 작은 정보도 나중에는 유용하게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번 알아두면 두고두고 도움 되는 생활 속 팁을 알려드립니다. 꼭 기억해두시고 필요할 때 요긴하게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어 고르는 방법

하드케이스는 내구성이 강해 외부 충격으로부터 짐을 보호하기에 용이 하다. 방수 문제에도 걱정 없지만 소프트케이스보다 수납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소프트케이스는 형태 변형이 가능하고 외부에 수납공간이 여러 개 있어 물건 배치에 효과적이다. 단. 찢어질 우려가 있고 세척에 어려움이 있다. 방수 문제는 보호 커버로 해결할 수 있다.

인천공항 편의시설

해외 여행 시 거치게 되는 인천공항에는 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 설이 준비되어 있다. 우선, 인천공항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탑승구 위치, 운항정보, 교통·주차, 휴게실, 쇼핑, 식음료 등 공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여행객들은 이 외에도 셀프체크인, 자동출 입국심사 등록, 외투보관 서비스, 사우나, 샤워실, 세탁소, 택배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즐겁고 설레는 해외여행을 더욱 산뜻하게 출 발해보자.

기내 서비스 품목

기내에서는 칫솔, 슬리퍼, 안대, 귀마개, 담요, 패션 잡지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장시간 비행 시 면도기가 제공된다. 단. 필요할 경 우 승무원에게 따로 요청해야 한다. 여성분들의 경우 갑작스런 생리현상 으로 인해 필요한 여성용품도 요청할 수 있다. 저가 항공사의 경우 제공 하지 않는 품목이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건강보험 · 국민연금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철저



• 부산시회는 7월 6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누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 연금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시 보험료를 소급·추징당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안내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타산업과 달리 건설현장을 건설업 본사와 다른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적용하므로 건설현장별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현장별로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1개월간 20일 미만으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건설업 본사 소속 가입대상자로 적용되어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회원사에서는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20일 미만 근로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어 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시 보험료를 소급·추징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회원사의 주의를 당부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시행 안내



● 국토교통부에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자 및 건설기계대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교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난 2월 3일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했으며,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건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시정조치 미이행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회원사에 각별한 업무처리를 당부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인정기능사 신청 경력요건 완화 안내



● 우리 협회에서 건설현장의 원활한 기능인력 공급 및 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인정기능사 제도 활성화 방 안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인정기능사 신청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공포 (대통령령 제27440호, 2016,8,4,)되었으며, 완화된 기준은 금년 하반기 협회 관련 규정과 심사기준 등을 정비하여 2017년 상반기 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에 있다.



인정기능사 신청 경력요건 완화: 5년 → 3년

※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1호 라목

건설관련 법규 준수 안내

부산광역시에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 부산광역시에서는 건설노조 파업에 대비하여 노조 지도부와 대화채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관급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대여대금이 체불되는 등 위법사항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이의 개선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건설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우리시회로 협조 요청해 왔다. 이에 시회는 8월 5일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철저

위반 시 제재사항: 과태료(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철저

- 1건의 건설기계대여 계약금액(1개의 건설현장에서 동일한 건설기계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서 발급
- 위반 시 제재사항: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1개월 또는 2천만원 과징금 부과
-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덤프트럭 적재함 적재 기준 준수
- 적재함 상단 5cm 이하 수평 적재
- 위반 시 제재사항: 과태료(1차 120만원, 2차 160만원, 3차 200만원)
- 자가용 건설기계 및 자가용 살수치(화물차) 불법영업 근절
- 자가용 또는 미등록 건설기계를 대여한 경우
- 위반 시 제재사항 : 과태료 100만원
-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장비 및 자재 사용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2016년 대비 7.3% 인상

-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37호, 2016,8,5,)하였다.
- 1. 최저임금액: 〈2016년〉시간급 6,030원 → 〈2017년〉시간급 6,470원
- 2. 업종 구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
- **3. 적용기간**: 2017 11 ~ 2017 12 31

2016년 2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분석 결과

2016년 2분기 전문건설업 동향 및 실태 주요내용

1. 조사목적

분기별 설문조사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실태 및 기업경영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제도개 선 및 정책건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조사방법

16개 시·도회에 가입한 주요 전문건설업체에 재직 중인 모니터 위원(총 289명) 대상 자계식 설문조사

3. 주요내용

- 2016년 2/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70.1%로 이는 2015년 3/4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조사치로서 최근 몇 년간을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임.
- 2016년 3/4분기 전문건설업 경기 전망
- 2/4분기에 비해 크게 악화될 것으로 나타남. 이는 시장상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에 대한 전 문건설업체들의 우려가 선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상반기의 수주실적 등에 비추어 본다면 다음 분기 에 그 같은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음.
- 전문건설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
-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는 'SOC 등 공공발주의 확대', '입·낙 찰제도의 개선', '민간투자 활성화' 순임.
- 기업경영상의 주요 애로사항
- '수주부진' 과 '인력난·인건비 상승'

2016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안내



● 부산시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하반기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회원사에 안내했다. 2016년 하반기에 적용될 표준품셈은 총 39개 항목이 개정되었으며, 특히 우리협회의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휴전 또는 궤도공사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던 「휴전시간별」 할증 기준을 작업시간제한 할증률로 개정하여 모든 공사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공사, 도로포장공사 등 최대 35%까지 품의 할증이 가능하여 업계 채산성 향상을 기대해 본다.

2016년 하반기 적용 표준품셈 개정 항목

계	토목	건축	기계
39	16	14	9

표준시장단가는 토목 1,083개 항목, 건축 510개 항목, 설비 375개 항목 등 총 1,96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 번 개정에는 시공단가를 반영하여 1,818개 항목의 단가가 상향(평균 1,48%) 되었다.

표준시장단가 전환('15.3.) 이후 현실화 하지 못했던 흙깎기 등 995개 항목에 대한 시공단가를 집중 조사하여 반영한 결과이다.

※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신기술 · 원가정보 → 표준품셈 또 는 표준시장단가에서 다운로드하여 참고하면 된다.

정기 전국대학생 학술발표대회 홍보 및 참석 안내



•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주관하고 우리협회와 국토교통부 등이 후원하는 「2016 정기·전국대학생 학술발표대회」 가 11월 11~12일 이틀 동안 개최된다. 이에 부산시회는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1. 일시

가. 정기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 2016.11.11.(금), 08:30 나. 전국대학생 학술발표대회 : 2016.11.12.(토), 12:00

2. 장소 인하대학교(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3. 참석대상 학술발표대회 관심업체

4. 프로그램 건설산업과 건설경영, 건설정보화 및 BIM, 첨단건설기술 및 관리, CEM 사례, 특별 섹션

5. 논문제출

가. 제출기한 : 2016.9.30.(논문심사 10.6.)

나. 제출방법: 학회 홈페이지(www.kicem.or.kr) 참조

6. 참가비용

가. 정기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1) 1차 등록(8.1.~10.28.): 1인 170,000원(4인 참가 시 1인 무료) (2) 2차 등록(10.29.~11.12.): 1인 200,000원(1차 등록마감 후 등록 시)

나. 전국대학생 학술발표대회 : 무료

7. 문의사항 사단법인 한국건설관리학회 사무국(02-556-5184~6)

201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 안내

상반기 건설업 평균임금 대비 3.86% 상승 175,071원... 일반직종 165,389원 ● 올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일평균 임금이 상반기에 비해 3.86% 오른 175,071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시회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산출 근거로 활용되는 「201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시중노임단가)」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해당 조사 노임은 1일 8시간 기준(잠수부는 6시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적용된다

건설 주요 15개 직종 임금 현황을 살펴보면 △작업반장 124,304원 △보통인부 99,882원 △특별인부 120,716원 △비계공 175,367원 △형틀목공 168,448원 △철근공 164,864원 △콘크리트공 157,427원 △포장공 137,978원 △조적공 143,356원 △건축목공 158,297원 △방수공 116,958원 △미장공 157,810원 △타일공 153,735원 △배관공(수도) 143,391원 △건설기계운전사 143,601원으로 나타났다.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신기술 · 원가정보 → 임금실태를 참조하면 되며 개별직종별 노임단 가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보면 된다.



「건설업 교육 이수」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의5제4항에 의거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교육 기관으로 지정 받아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과정을 개설하여 2016.6.3.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건설업 신규등록자 및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앞으로 건설 관련 법령 ·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윤리, 건설공사 품질 · 안전 및 환경관리 의식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건설업 교육대상

- 건설업 신규등록자(추가 면허등록 제외) [의무사항]
- 2016, 2, 12, 이후 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영업정지 처분 이후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업등록자 [임의사항]
- 2016. 2. 12. 이후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업체
 - → 영업정지 기간 내
 - ※ 교육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 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
 - ☞ 법인 대표자 수료시 15일, 등기부상 임원 수료시 1인당 5일 감경(최대 3인)

■ 2016년도 교육일정

10월	11월	12월
7일 (금)	4일 (금)	2일 (금)
21일 (금)	18일 (금)	16일 (금)

※ 교육장소: 서울전문건설회관 2층

■ 교육과목

교육과정	교육내용	시 간
건설업자 윤리경영	O 기업의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등	1,5H
건설산업 관련법규	O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국가계약법 등	4.5H
건설공사 안전관리	O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등	2H

■ 신청방법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홈페이지(edu.kosca.or.kr)를 통하여 교육일정, 교육안내, 교육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 문의처: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담당자 ☎ 02-3284-1080



우리는 **왜** IBK카드인가!

우리협회에서는 회원의 복지 및 편의 제공을 위해 2014년 3월 IBK기업은행과 제휴를 맺고 협회 회원사만이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특화카드인 『대한전문건설 협회-IBK 제휴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제휴카드의 혜택

- 01.IBK기업은행의 기본서비스 제공 외 대출금리 및 환율우대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 02.기존 카드보다 많은 포인트적립(제휴카드 최대 0.5%, 기존카드 0.3%)
- 03.세무지원 서비스(부가세환급지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 현재 IBK은행과 거래하시는 회원사는 협회로 연락주시면 바로 전문건설인 맞춤형 카드로 변경해 드립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051-633-0260)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유 권 해 석

01 유권해석

건설업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감경처분 관련 (_{질의})

건설업자가 여러 개의 업종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복수의 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후 건설업 교육을 받았다면 영업정지 중인모든 업종에 대하여 15일을 감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1개 업종을 선택하여 감경해야 하는지?

【답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관련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호 다목 1) 다) 및 4)에서 건설업자가 건설 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15일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mark>영업정지 중인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15일을 감경</mark>하는 것이 타당함.

[근거]

국토교통부 '16년 건설업 발주자 및 등록 실무자 교육 교육교재 (2016.9.9.)





02 유권해석

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질의】

공기연장이 계약조건변경에 해당하는지? 발주관서의 사정에 의거 일방적으로 공기연장을 요구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모든 추가비용(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산재보험료, 이윤 등)은 당연히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설계변경조치가 가능한지?

【답변】

-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 제5항(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 없이 계약단가를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는바, 본 건 질의의 공기연장은 계약조 견의 변경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됨.

【근거】회제 125-3111(1986,8,6,)



건설판례

03 724EPA

서울중앙지법 2010.7.7. 선고, 2009가합37669 판결 [공사대금]

[판시사항]

- [1]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에 의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그 조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채권의 직접청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 발주자나 제3채권자가 그 압류 또는 가압류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직불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3]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정하는 기준(=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시의 선후)

【재판요지】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은 원사 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 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과 밀접한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일반채권자들

에 비하여 사실상 우월한 지위를 갖도록 배려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인바,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등에 인정되는 이러한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여 배제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하지 못한다'고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에 의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거나,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채권의 직접청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그 이전에 당해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압류·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피압류채권이 존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나 제3채권자들은 그 압류 또는 가압류로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직불청구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 [3]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열관계는 채권자평등이라는 일반원칙에 의하기보다 직접지급 요청 도달일시의 선후에 따라 우열관계를 정하고, 그 도달일시가 같은 수급사업자들에 한해서만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함이 상당하다.

판사 오기두(재판장), 김정태, 박민준

회원사 질의·응답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의 건설공사대징 통보 방법은?

-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원 도급 공사는 1억원 이상, 하도급 공사는 4천만원 이상의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을 경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 업종합정보망(키스콘)을 이용하여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 보토록 하고 있음. (※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도 30일 이내 에 통보)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3호, 제99조 제3호, 동법 시행령 별표7에 의거 시정명령 및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400만원) 처분됨에 유의.
 - 계약자공동도급으로 발주된 공사의 경우에는 주계약자(종 합건설업체)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의 정보까지 일괄적 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함.
 -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도 대표사가 일괄적으로 구성 사 정보까지 작성하여 통보

공사금액에 따른 직접시공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서는 아래와 같이 공사금액별로 직접시공 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토록 하고 있음. 단, 1건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됨

• 공사금액별 직접시공비율

공사금액	직접시공 비율
3억원 미만	50%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20%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

-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 시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150만원) 처분되며, 직접시공의무 미이행 시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처분됨에 유의해야 함.
- ※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으로 2016.8.4.부터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은 면제. 단, 직접 시공비율은 준수해야 함. 또한,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 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 서면 승낙한 경우 또는 특 허·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을 그 특허·신기술을 사용 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직접 시 공하지 않을 수 있음.





건설공사 설계시 반영해야 하는 4대보험 요율은?

-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히 적도록 규정하고 있음.
- >>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해야 할 4대보험 요율은 다음 과 같음.

구분	요율 및 산정방법	
산재보험료	노무비 × 3.8%	
고용보험료	노무비 × 0.87% 조달청 유자격자명부의 등급에 따름. 1등급(1.39%) ~ 7등급(0.87%)	
국민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 × 1.7%	
국민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 × 2.4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6.55%	

시공자가 하자보증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은?

-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 30조 별표4에 의해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하자담보책임이 있음. 단,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 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 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 시공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5호에 따른 시정명령 및 동법 제82조 제1항 제 5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 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시공사의 하자보증서 발급 및 발급지연으로 인한 책임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발주자와 시공사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 및 민사관계법령을 토대로 당사자 간에 협의 처리하여야 할 것임.

불법체류 외국인의 산재처리 가능 여부?

- 》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던 중 산재사고 로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 신청은 가능하며, 내국인과 동일 하게 처리할 수 있음.
- >> 그러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출입국관리법 제 18조 제5항 및 제94조 제11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됨에 유의 (※고용허가서도 반납해야 함)
- 》 또한, 불법체류자의 경우 산재요양기간이 끝난 후 보상에 대한 절차 및 재산부분에 대한 금전처리가 마무리되면 산 재요양기간에 받았던 G1비자를 연장하지 않는 한 불법체 류자 신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강제출국 당함.

SPECIAL 09 +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

미래주의를 담은 건축물

아토미움(Atomium)





아토미움은 1958년에 열린 국제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전시관으로.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에서 북쪽으로 5km 정 도 떨어진 라켄공원 내에 있다. 당시 철강산업이 발달한 산업국가로서 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자 지어졌으며, 설계는 유진 바터게인이 맡았 다. 그는 '젊은이들이 공학과 과학 연구에 헌신하게끔' 영감을 불어넣 어 주기를 희망했다고 전해진다.

전체적인 형태는 원자 핵분열의 순간을 약 1.650억 배로 확대했다고 보 면 된다. 9개의 알루미늄 원구와 철골로 이루어져 있고 높이는 102m에 달한다. 각 구의 반지름은 18m이며 거대한 지지대 3개가 전체 구조물 을 받치고 있다.

국제박람회 이후 과학 전시관으로 쓰이던 아토미움은 2006년 보수를 거쳐 현재는 브뤼셀 박람회 기념 전시실, 과학 전시관, 전망 레스토랑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각 구는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으며, 맨 꼭대기의 레스토랑에서는 브뤼셀의 전경이 파노라마로 펼쳐 진다. 밤이 되면 켜지는 조명도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특이한 구조 와 함께 빛을 발하는 환상적인 아름다움은 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이끈다.

세계 제일의 마천루

부르즈칼리파 (Burj Khalifa)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신도심 지역에 위치한 부르 즈 칼리파는 높이 829.84m, 163층의 초고층 건물이다. 총 공사비 15억 달러가 소요된 이 건물은 2004년 착공하여 2009년 완공되었으며, 2010년 1월에 개장하였다. 연면적은 50만m²로 우리나라 잠실종합운동 장의 56배이며, 규모 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다. 건물은 사 막의 꽃을 형상화한 외관에 이슬람 건축 양식을 접목해 하늘로 뻗은 나 선형 모양으로 설계됐다.

완공 이전 이름은 부르즈 두바이였지만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이름인

'칼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을 본따 개명했다. 시행사는 중동 최대의 부동산기업인 두바이의 에마르이고. 한국의 삼성물산(주)이 건설 부문 시공사로 참여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부르즈 칼리파는 호텔, 주거시설, 사무실 등 대규모 복합시설로 구성됐 다. 1~39층은 호텔, 40~108층은 고급 아파트, 109층 이상은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다. 123층과 124층에는 두바이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들어서 있다.

19 **특**별기고

전문건설인과 건축: 전문화, 특성화를 위하여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조 승 구

필자는 짧지만 이 글을 통해서 현재 건축교육의 환경과 건설업체의 전 문성 등이 지니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하고자 한다.

○ 1 "Ctl+C" 복사하기 와 "Ctl+V" 붙이기

■ 필자는 시간이 나면 스포츠 TV를 즐겨보는 편이다. 여러 채널이 있지만, 공중파를 비롯하여,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특정 종목에 대한 예고가 있으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방송을 시청하는 애청자 중 한 사람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나오기 시작한 "국가 직무능력표준(이하, NCS)"에 대한 광고를 보면서, 필자는 약간의 어지 러움을 가끔씩 느끼고 있다. 특히, 광고의 내용을 보면서, 건축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우리 교육의 환경과 건축의 실무적 현황 등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약간의 과장이라고 하면 없지는 않을 것이지만, 필자의 경우, 매년 졸업자들의 취업률 등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이와 같은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앞서 기술된 NCS의 예를 들면, 현재 많은 학교에서 수행 과정을 취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용어사전에 명시된 NCS의 정의를 보면,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직무능력은 대학교육에서 실행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전문교육에 의해서 형성되는 능력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단 NCS 뿐만아니라, 각 학교마다 국가교육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매년 입시철이 될 쯤이면, 어느 학교와 학과에 관계없이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 마치 선거철을 떠올리게 할 만큼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학생들의 급감에 따른 학교마다 생존을 위한 방법론 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물론 학생에 있어야 학교와 각 학과가 존재하기에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는 필자 또한 이해가 된다. 또한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다홍치마' 라는 말처럼,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받는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문화와 특성화라는 이 용어들은 언제부터인가 대학교의 가치와 등급을 매기는 일종의 기준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학교가 중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전문적인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미가 있으며, 학생들은 이를 받아들일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관계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학교는 기존의 주문식 교육이 아닌, 학생들이 창의적인 생각과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는 곳이다. 결국, 전문화와 특성화의 기치는 과거, 포드 시스템¹⁾(Ford System)에서 나타난 단편적이고 고정적이고, 또한 일률적인 과정의 수행이 아닌, 창의와 상상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인 사회 직업군과 결합되었을 때, 그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즉 과거의 교육적 방식이 "ctl+c"/복사하기 즉, 똑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복사"하는 방식이었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ctl+v"/붙이기는 동일한 방식에서 나타난 결과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그러한 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물론 탈피라는 용어가 주는 의미가 "과거의 것을 모두 버리자."라는 식의 '근대적인 방식'에 근거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교육적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좀 더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며, 이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필요한 것일까?

↑ 산학과의 연계와 현실

□ 매학기 방학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현장실습"이라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이는 학교교육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학교와 학과마다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과정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학생들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특히 학교의 교육을 학생들이 적용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는 속도가 학생마다다 다르며, 또한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비단 학생들만의 책임일까라는 점에서 보면, 다소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학교와 현장과의 괴리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2000년 이후, 학계에서 불고 있는 키워드 중 하나가, "융합"과 "통섭"이다. 이는 서로 다른 영역의 학문이 서로의 장점을 흡수하여 새로운 영역의 이론을 창출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다. 인문학과 물리학의 결합을 통한 통섭은 이를 대변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처럼 통섭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교육과 현장은 위의 사례처럼, 전혀 다른 영역과 분야와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또한 인정되고 있다. 다소 어려운 용어였지만, 이를 우리의 현실, 특히 건축을 비롯한 건설분야에서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2010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학교육에 대한

산업체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2010년 직업교육 선진화정책 대토론회,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2010.05.04. 발췌) 보고서의 내용에 서도 나타나는 바, 교육과 실무 간,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교육과 현장간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보고서의 내용이 모든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또한 앞으로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말라고 보장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부산의 사례로 보면, 부산지역의 산업 분류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의 수를 살펴보면(2012년 기준), 건설업 사업체 수가 6,892개로 부산 지역 전체 업체의 2.6%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72,95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의 현황을 보면, 건설업 사업체 수는 매년 450개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업체당 종사자 수는 2010년/11.41명, 2011년/10.80명, 2012년/10.59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체의 경우, 인력을 충원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인지하는 것이, 아마도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력의 수급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전문화된"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먼저 위의 수치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지역경제와 건축사업 전반에 대하여, 인력의 감축 또는 감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학생은 대학교육을 받으며, 또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희망한다. 학교마다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학생을 '포드 시스템'의 결과로 배출할 수 없으며, 산업체 또한 각자가 요구하는 인력을 100% 충원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바로 여기서 접점이 생긴다. 일반적인 이야기처럼 학생들은 "ctl+v"의 결과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산학이 공동으로 이루어내는 교육적 환경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물론각 학교와 학과 모두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화된 교육적 환경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산업체의 참여가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결국 전문화된 교육을 받은 학생이라

고 할지라도, 그것을 적용하고 실행하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면, 산업체와 학교 모두 '열린 마음' 과 '적극성'을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대처해야 한다.

산업체는 단순히 인력을 보충하는 근거지로 학교를 바라보면 안 될 것이며, 학교는 단순히 취업률을 상승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을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단순함 속에 진리가 있다."라는 말처럼, 단순하지만, 산학과 연계된 실질적인 교육 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현장실습, 취업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수 있는 통합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적 환경에서 산업체는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는 "ctl+c"/복사하기의 "ctl+v"/붙이기의 관계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산학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협력하여, 생성할 수 있는 "ctl+shift+s"/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실행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을 넘어 창의성과 상상을 바탕으로 한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 서로가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수동적인 관점을 벗어나야 함을 의미한다. 필자는 전문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커리어를 존중한다. 그리고 그들이 쌓아 온 경험과 노하우 등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어 있는 것 또한 존중한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인재 양성의 과정에서 수동과 피동의 입장에서 관전하는 갤러리가 아닌, 학교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한 명의 인재라도 더 양성할 수 있는 주체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의 마무리를 대신 할까 한다.



1) 포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요소인 이동조립법은 '일에 사람을 가져가는' 대신 '사람에게로 일을 가져가는' 포드의 착상을 실현시킨 생산 시스템이다. 구체적으로는 작업공정의 순서대로 배치된 작업자 앞을 재료가 컨베이어에 의해 규칙적으로 통과하며, 각 작업자는 고정된 장소에서 일정한 리듬을 타고 작업에 임하는 생산 시스템이다. 그것은 생산의 직선적인, 중단이 없는 흐름을 유지하는 생산 시스템이라는 의미에서 '플로 작업 시스템(flow production system)', 컨베이어라는 이동조립장치가 사용되는 데서 '컨베이어시스템(conveyor system)'으로도 불린다. — [네이버 지식백과] 포드시스템 [Ford system] (두산백과사전일부 발췌)

하도급 분쟁 해법 【**수급사업자의 통지의무**】

수급자가 통지의무 불이행해도 원래 보증사고와는 별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의 약관에는 보통 '수급사업자는 당초 계약에 따로 지급받아 야 할 하도급대금을 그 기일에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지급채무의 지급기일(어음의 경우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후이거나 당초 대금지급기일(어음의 경우 만기일)을 연장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실을 반드시 보증기관에 통지해야한다'와 같이 하도급계약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통지토록 하는 사항이 기재돼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에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와 같은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하도급 대금 지급의무의 면책 규정도 함께 규정돼 있기 마련이다. 그러면 과연 '통지의무를 게을리해서 증가된 채무'는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통지의무를 규정한 이유부터 알



아야 한다. 대법원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의무를 부담시킨 취지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통지의무 발생 원인이 되는 사정 으로 인해 보증기관이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보증책임을 추 가로 부담하게 되거나 보증책임이 부당히 확대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증기관 스스로 그와 같은 사정 으로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기하고 있다(대법원 2016, 7,14, 선고 2015다217713 판결 참조).

즉, 통지의무는 당초부터 부담했던 보증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통지를 하지 않아 '확대'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한 것이므로, 수급사업자가 통지를 제대로 했다면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라는 보증사고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수 없게 됨에 따라 '증가된 손해만'을 보증기관으로서 면할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당초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 기일을 지나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는 보증서에 기재된 통지의무가 발생한 것이지만, 보증기관이 발주자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증가된 손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증기관은 어음에 대한 지급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공동수급체와 하도급계약의 효력]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 타 조합원 동의 없으면 계약효력 제한

종합건설업자 A, B, C가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공공기관으로부터 신청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A가 맡기로 A, B, C가 합의했고, A는 대표사의 지위에서 하도급업체 D에게 도급공사 중 롤스크린 공급 및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D는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하도급대금 2억2,700만원을 A로부터 전자어음으로 수령했는데, A의 회생신청으로 은행이 전자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해 D는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 D는 할 수 없이 공동수급체의 나머지 구성원인 B와 C에게 A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D는 나머지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사안에서 D가 하도급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 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이 무엇이며, 이들 내 부의 제한 규정이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맺은 제3자와의 사이 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민법상 조합의 경우에는 모든 조합원(이 사안의 경우 A, B, C를 말함)을 위해 대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하도급공사의 체결 행위는 공동수급체의 영업을 위해한 행위이고, 이러한 상행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모든 조합원을 위한 표시하지 아니한 체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원사업자 A와 수급사업자 D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B와 C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다(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참조).

그러나 만약 A, B, C가 내부적으로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제한한 경우에도 D는 여전히 B와 C에게 하도급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공동수급체에게 그러한 약정이 있었고, A가 B와 C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D는 A와의 하도급계약을 B와 C에게 주장할 수 없다.

즉,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이고 조합은 단체성이 중시되는 회사와는 달리 개인성이 보다 중시되므로, 하도급계약 체결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그 대표자의 업무집행이 유효한 것으로 조합원들이 약정했다면 그 내부 약정은 유효하므로 결국 A가 B나 C의 동의 없이 D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는 적법한 대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D는 B와 C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6.7.7. 선고 2016대216090 판결 참조).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이우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팀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지난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같은 해 3월 27 일 공포된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거 쳐 9월 2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 탁의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를 핵심내용으로 합니다. 헷갈리 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자세한 사례로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적용 대상

적용 대상기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 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입니다.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 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도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자는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에 해당됩니다. 앞서 일컬은 이들을 '공직자 등'으로 일컬으며 이들의 배우자도 적용 대상입니다. 이 외에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및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례 1]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 자 중 '직원'의 범위

(공직자 등'의 정의와 관련하여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및 언론사의 경우에는 임직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물리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예컨대 수위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자 운전자 등이나계약직 임시직) 등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가요?

A.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및 언론사와 용역 도급 계약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2] 골프접대의 가액 평가

O. 공무원에게 골프접대는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대는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무원과 전혀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이라면 1회 100만원 이하,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골프접대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무원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골프접

[사례 3]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의 범위

Q. 지역주민 A가 지인인 OO시청 건축과 과장 甲에게 관계법령 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축허가를 해 달라' 는 부탁을 하였고, 甲은 같은 과 소속 건축허가 담당 주무관 乙에게 증축허가를 하도록 지시하고, 乙이 이를 이행한 경우 甲, 乙, A는 청 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A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甲은 건축과결재선상에 있는 과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乙도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사례 4]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

Q. 건설업체 직원 A가 구청 인·허가 담당자 甲에게 '민원을 빨리 처리해 달라' 또는 '서둘러 허가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런 부탁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나요?

A. 형식상 '서둘러 허가를 해 달라'는 부탁이 실질적으로는 '법 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청탁이었고, 이에 대해 청탁을 하는 자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간에 내심의 의사가 합치하여 법령을 위반한 직무수행(관계법령상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해줌)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문의 등을 하는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5조제2항제4호).

[사례 5]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
 공무원 甲에게 토지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

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 서도 甲을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청탁한 경우 甲과 A는 청 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A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 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뿌은 거절·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사례 6]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

Q.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는 OO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 사(공사금액 5천만원)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해당 대학교 교수로 재 직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 乙을 통해 계약 담당 직원 甲에게 공사를 분할하여 공사금액을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건설사업자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여 건설사업자 A가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된 경우 甲, 乙, A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공사 및 금액을 분할하여 특정 인을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5조제1항제7호). A는 제3자(乙)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3항). 乙은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등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제5조제1항, 제23조제1항제1호). 甲은 乙의 부정청탁에 따라 건설사업자 A를 공사계약 당사자로 선정하였으므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며(제6조,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제21조).

[사례 7] 법정기간 내 처리요구 등

Q. 민원인 A는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OO구청에 증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자신의 친구인 OO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甲을 통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 재대상인가요?

A. 진행상황에 대한 확인 문의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제5조제2항제4호)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신규 회원가입 업체 현황

[2016. 7. 1.~ 9. 30.]

상 호(대표자)	주 소	상 호(대표자)	주 소
(주)디에이치플러스 김현주	부산 금정구 시실로 11-3, 4층(부곡동, 순흥빌딩) T: 051-501-9906 보유업종: 실내건축	(주)명부건업 명효병	부산 수영구 망미번영로38번길 88 (광안동) T: 051-761-3119 보유업종: 토공 보랑그라우팅
(주)서원이엔씨 김 영 기	부산 연제구 안연로8번길 92 (연산동) T:051-752-0954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	(주)올라가가 류승석 (주)올라가가 여창호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57, 402호(중동, 백송오피스텔) T:051-747-4391 보유업종: 금속구조물·창호
(주)우미산업 윤지유	부산 강서구 울만로25번길 103-7 (대저2동) T: 051-506-4906 보유업종: 실내건축	(주)유종건설 이상웅	부산 금정구 금단로 136, 상가 201호(남산동, 삼성아파트) T: 051-528-1579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
이오건설(주) 이영주	부산 금정구 반송로 391(서동) T: 051-991-6771 보유업종: 실내건축	(주)조은세상 김 대 영	부산 사하구 원양로398번길 131 (감천동) T:051-257-3344 보유업종: 실내건축
(주)지랜드피씨 이 인 환	부산 금정구 청룡예전로 96번길 16 (청룡동) T: 070-4628-9652 보유업종: 철근·콘크리트	(주)플레이메카부산 김리진	부산 강서구 도도본리길 54 (대저2동) T:051-831-9091 보유업종: 조경시설물설치
주) 프립 김 영 남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15 (거제동) T: 051-501-8682 보유업종: 실내건축	(주)한욱이엔씨 안 영 필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97, 지하 101호(가야동, 한신센타뷰) T:051-891-2700 보유업종: 도장

부산 전출 · 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16. 7. 1.~ 9. 30.)

전출업체 현황	전입업체 현황
(주)거양산업(대표 : 백은숙, 경남)	(주)고래건설(대표 : 심만식, 경남)
(주)돈광건설(대표 : 박희돈, 경남)	다솔건설(주)(대표 : 장희선, 김노훈, 경남)
(주)산지원(대표 : 서창수, 경남)	(주)다인토건(대표 : 정대주, 강원)
솔찬조경(주)(대표 : 김병식, 인천)	(주)명문토건(대표 : 박동현, 경남)
(주)이강건설(대표 : 이강일, 경남)	(합)삼은산업(대표 : 정은숙, 경남)
(주)태화엘앤씨(대표 : 장철익, 경남)	서정건설(주)(대표 : 이성권, 대전)
해우개발(주)(대표 : 한외훈, 경북)	(주)이오조경(대표 : 오상준, 대전)
(주)화인트리(대표 : 강남욱, 경남)	(주)창진건설(대표 : 이수미, 경남)
	한남토건(주)(대표 : 이형용, 경남)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16. 9. 30. 기준)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중구	27	61	남구	96	139	북구	78	105
동구	55	111	금정구	208	313	사상구	110	136
서구	28	33	연제구	140	219	강서구	155	213
사하구	73	99	해운대구	197	277	기장군	184	274
영도구	23	34	수영구	108	153	합계	1,818	2,645
동래구	164	216	부산진구	172	262	ī	1,010	2,040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 시 업무처리 매뉴얼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신급인신보신급)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재해자 발견 및 조치

- 01.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02.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119 신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
- 03.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보고 및 현장보존
- 04. 목격자 및 작업지휘자 진술 확보
- 05. 입증자료 수집 및 보존
- ※ 사고 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_

산업재해 발생보고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에 대해 보고 의무 산업재해: 산업재해(3일 이상 휴업)가 발생한 날부터

중대재해: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 보고사항: ①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② 조치 및 전망 ③ 그 밖의 중요사항



산업재해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 기록할 사항
 -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②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 ③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 ※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 가능



재발방지 계획 기록 보존 및 개선활동 실시

01. 재해자 발견

및 조치

- 즉시 작업을 중지시킨 후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119 신고 후 지정병원 등으로 후송 → 구급구조증명원 발급
-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보고 및 사고원인 등 조사를 위해 현장보존(사진 등 증거 확보)
- 현장 목격자 및 재해자에게 재해발생경위, 작업지시내용, 사고당시 안전시설여부, 사고 당시 보호구 착용현황 등에 대한 진술 확보(가해자가 있는 사안인지 확인) → 재해자 및 목격자 진술서 자필로 작성(허위 진술 시 형사고발 조치 강조)
- 안전조치 미비사항 등 파악, 안전관계 서류(안전교육일지, 보호구 지급대장,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경우 정기검사증 등. 안전점검일지, 출근부 등) 준비

※ 준비서류

- 안전시설, 사전 작업계획서, 작업순서도 등 : 사진 및 관련 서류
- 보호구: 보호구 지급대장 및 보호구 지급사실에 관한 사진
- 안전교육 실시 여부: 채용 시, 정기, 특별, 작업내용 변경, 신호수, 관리감독자

- 점검: 도급사업 위험작업
- 안전담당자(건설은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점검하였음을 입증
- 사고현장 사진 및 약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관리책임자) 선임계.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 근로계약서, 재해자 및 목격자 작업일보, 당일 출역여부 확인
- 진단서, 의사소견서, MRI 촬영시 판독지, 진료기록 발급 제출(필요 시: 건강보험 요양내역서, 전 진료기관 진료기록, 기타 참고자료 수집)
- 재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안정시킴
- 응급실 의무기록지 작성 시 사고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하여 기록
-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 원인조사를 위해 현장보존
 → 이를 어길 시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 보고를 하고 수사에 착수

02. **산업재해**

발생보고

(1) 일반 산업재해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 건설업은 산업재해보고 및 중대재해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사실이 관계기관 에 통보됨에 따라 추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될 수 있음
- ① 제출 방법: i) 사업주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산업재해예방지도과)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ii) 우편 송부, iii) 팩스 송부 또는 iv) 웹사이트 (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산업재해조사표)에 입력 또는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출 가능
- ② 제출기한 : 3일 이상의 휴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업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보고기한은 도달주의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는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웹사이트 제출의 경우는 마지막 날 자정까지 이루어져야 함
 -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재해자를 위한 산재처리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제1호)

(2) 산업재해조사표 세부항목 작성

- ① 휴업예상일수(산업재해조사표 17번)
 -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연속적인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임(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 포함)
 - ※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으로 부여하였다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휴업예상일수가 추정 시 당해 휴업이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에 따라 적법성을 판단함
- ② 재해발생일(산업재해조사표 18번)
 -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 표를 제출
- ③ 재해발생 원인(산업재해조사표 19번)
 - 운동경기·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됨
 - 근로자 귀책에 의한 사고의 경우도 보고대상인지 여부는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작업·업무과정에서 근로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업 3일 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대상 재해임

- ※ 만약 근로자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여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라 산업재해 여부를 먼저 판단
- ④ 근로자대표의 확인여부
 - 근로자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산업재해조 사표를 제출하거나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 가능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인터넷사이트로 입력할 경우 근로자 대표 날인
 -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는 ① 웹사이트 상의 서식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직접 입력하거나 ② 웹사이트 상의 입력창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스캔 파일을 첨부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음. ①번의 경우에는 근 로자 대표가 날인했다는 근거자료를 스캔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입력 시 첨부하고, ②번의 경우는 근 로자 대표의 날인이 들어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됨
 -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3) 산업재해조시표 작성 시 유의사항

- 근로자가 퇴직 후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발생 보고대상 재해에 해당됨
- 사고 등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처리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동 사고 등에 대한 요양신청이 불승인 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산재통계에서 제외됨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후 조사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수정·제출이 가능함

 03.

 산업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즉시 주대재해 반재 보고

- 중대재해
 - 지체 없이 사업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예방지도과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예를 들어, 오전 9시에 재해가 발생하면 오전 12시는 지체 없이 보고한 것이나 오후 6시는 위반 가능성 있음)
- 팩스로 제출 시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를 작성 및 발송
- 중대재해 발생 보고 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관계 전문가(안전관리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도원의 기술사 등)에 조사 지원을 요청하여 함께 현장조사할 수 있음
- 재해조사에 참여한 관계전문가는 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
- 경찰에서 중대재해 발생 관련 현장조사 및 목격자 진술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응 필요

○4.산업재해를기록하고 3년간 보존

- ①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②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 ③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④ 재해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 가능

UO. 재발방지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실시

-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분석 및 검토하여 재해 재발방지계획을 작성
- 재해발생 개요는 재해발생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
- 재해발생 원인에 상호 대응이 되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7편

미래산업을 바꿀 혁신기술

증강현실



증강현실이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 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 술로서, 실제 현실 공간에서 얻은 이미지 에 가상의 그래픽을 입혀 합성한 후 그것 을 스마트폰이나 모니터 등의 디스플레이 를 통해 눈으로 보는 것이다. 가상현실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짜 공간을 만들 어 내는 것이라면, 증강현실은 현실 속에 실제 공간을 기반으로 가상의 요소를 추 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증강현실 기술의 적용

지난 7월 한 모바일 게임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바로 나이앤 틱이라는 회사가 내놓은 '포켓몬 고'게임이다. 일본의 유명 게임회사 닌 텐도의 게임 캐릭터로 유명한 이른바 '포켓몬'들을 잡는 새로운 방식의 모바일 게임으로, 이용자의 현실 공간 위치에 따라 스마트폰에 나타나는 포켓몬을 포획하고 훈련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포켓몬 고'게임 이 바로 증강현실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임이다. 이처럼 가장 발빠 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은 게임업계이다. 유명 1인칭 슈팅 게임 '스페셜 포 스'의 개발사인 드래곤플라이는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슈팅게임 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증강현실 게임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실내디자인 ▶ 게임 외에도 글로벌 가구 기업으로 유명한 이케아의 카탈 로그 앱 또한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하여 빈 공간에 스마트폰을 비추면 원 하는 가구가 배치되어 미리 방향이나 크기 등을 가늠해볼 수 있다.

제조업 ▶ 얼마 전 현대자동차는 증강현실을 이용해 새로운 방식의 HUD(Head up display: 자동차 전면 유리에 경로나 속도, 차량상태 등을 표시하는 것)를 개발하여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건설 ▶ 증강현실을 통하여 실제 현장에 건설장비가 투입되었을 경우 주 변 장애물인 주변 시설물. 타 건설장비와의 간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 며 플랜트 등 건물 건축 시에도 VR 기술을 활용하여 건축물을 가상공간 에 미리 건설해 봄으로써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숙련 기술자의 직임을 가상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숙련 기술자의 기술 전수에도 활용 가능하다.

의료 ▶ 3차원 정보를 정확하게 전하는 장점이 있어. 의료 현장에서 수술 방침을 결정할 때도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7월, 일본의 고베 대 학 스기모토 교수는 VR 영상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한 환자 데이터를 통 해 NTT 동일본 관동병원 신장 절제 수술 집도 의사에게 원격 지시하기도 하였다.

25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나. 위반자에 대한 제재

행정처분(건설업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호(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 술경력증을 다른자에게 빌리거나 빌려준 건설업자)⇒6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5호(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상 호를사용하여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할 경우)⇒건설업 등록 말소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6호(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 력증을 다른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 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 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있는 건설업자) ⇒ 건설업 등록 말소

행정형벌(건설기술자, 건설업자 등)

- 국가기술자격법제26조제3항제1호(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 나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건설산업기본법제96조제3호(다른사람에게자기의 성명이나상 호를사용하여건설공사를수급또는시공하게하거나이를알선한 경우또는건설업등록증이나건설업등록수첩을빌려주거나이를 알선할경우이를위반한건설업자와그상대방)⇒3년이하의징 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중앙회 신홍균 회장은 8월 17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직접시공제를 비롯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또한, 신홍균 회장은 정동영 의원이 최근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의 직접시공제 확대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정동영 의원은 전문건설업계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8월 26일 중앙회 신홍균 회장 및 회장단은 「강호인 국 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 항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신홍균 회장은 건설산업 발전방안으로 주계약자 공 동도급 제도 활성화를 적극 건의하고 직접시공 의무제도 의 비효율성에 대해 지적했으며, 이에 강호인 장관은 건설 공사의 물품발주 관행 등 전문건설 업계의 애로사항 개선 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 9월 6일 중앙회 신홍균 회장 및 회장단은 「국회 국토교 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 전문건설업체를 위한 건설투자 확대 방안 등 건설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면서 생활형 SOC 확충,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및 소규모 복합공사 활성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건설자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 입법 자제 등 업계의 산적한 현안 문제를 쏟아냈다.

이에 조정식 위원장은 정기국회 예산심사를 통해 생활형 SOC 예산 확대 등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시회 2016년 4/4분기 **주요일정 안내**

※ 협회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 자	주요 일정	
2016.10.13.(목)	청탁금지법 관련 전문가 설명회	
2016.10.18.(화)	2016 회계연도 모니터 회의	
2016.10.25.(화)	무료자문 및 법률 상담	
2016.11.4.(금)	부산전문건설인 단합 산행	
2016.12.15.(목)	건설공사 실적신고 강습회	



코스카레터를 읽고..

코스카레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다뤘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독자의견은 메일(kosca21@kosca.or.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독자의견은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은 통하여 소정의 상품 (문화상품권등)은 드겁니다.





백중건설(주) **정 호 성** 부장

산시회 소식이 잘 전해져서 너무 좋았고, 건설관련 법령 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참여 할 공간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성신창업 김 형 숙 _{실조}

회의 탁자 가장자리에 놓여있는 '코스카레터'를 우연히 직접 받게 되어 관심 있게 읽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정보며 실무에 도움 되는 알찬 내용이 이렇게 가득할 줄이야! 믿음과 사랑을 쌓아가고 있는 연인에게서 온 흐뭇한 레터 같았습니다. 표지부터 예쁜 '코스카레터' 다음 호도 기다리겠습니다.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 거북토건(주) 차장 **이선영**
- (주)에이비엠그린텍 사원 서민정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

- ④ 6개월. 15일

코스카레터 작임으셨나요? Quiz을 품고 정답은 맛심주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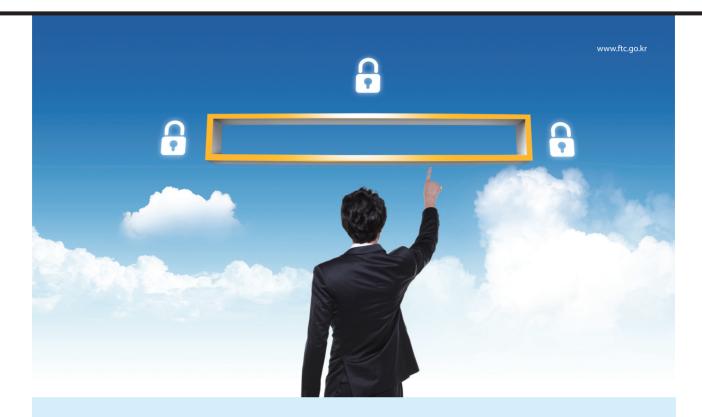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비고1 라목에 의거 우리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기 능사 경력증은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활용됨은 물론 5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서 현장대리인 배치가 가능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역량지수 평가를 통해 건설기술자 등급(초급, 중급 등)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정기능사 경력증은 5년(1,825일) 이상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심사와 기능심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440호, 2016.8.4.) 되면서 인정기능사 신청 경력요건이 5년에서 ()년으로 완화되어 우리협회에서는 2017년도 인 정기능사 심사부터 동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인정기능사 신청 경력이 몇 년으로 완화되었을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팝업창을 통해 응모 (기간: 2016. 11, 30.(수)까지하시면 추첨하여(정답자에 한함)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하도급 ·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익명으로도 제보하세요!

♣ 익명제보

- ▶ 중소기업이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 익명제보센터에 제보하세요.
 - www.ftc.go.kr → 민원참여 → 하도급 · 유통 익명제보센터</mark> 에 제보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인적사항, IP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아 제보자의 신원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울러, 조사단계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추정되지 않도록 조사시기, 조사범위를 신축적으로 조정합니다.

※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익명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제보에 대한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익명제보센터에 제보된 내용중 \triangle 하도급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triangle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triangle 이미 실명으로 신고하거나 처리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triangle 피제보자에게 이미 제보자의 신원이 알려진 경우, \triangle 타부처 소관 법률과 관련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가 곤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제보센터 문의 : 044-200-4593

● 실명신고 및 분쟁조정 신청

- ▶ 하도급·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통지받고 싶으실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세요.
 - 온라인 신고: www.ftc.go.kr → 민원참여 → 불공정거래 신고
 - 서면 신고 : 원사업자의 소재지가 있는 지방사무소

연락기관	담당지역 및 업무	연락처
종합상담실	하도급법 질의 및 전화상담	044-200-4010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 • 건설하도급과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	02-2110-6161~7 02-2110-6144~9
부산사무소 하도급과	부산, 울산, 경남지역	051-460-1041~5
광주사무소 하도급과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062-975-6841~4
대전사무소 하도급과	대전. 충남북, 세종지역	042-481-8018~20
대구사무소 하도급과	대구, 경북지역	053-230-6341~4

- ▶ 하도급・유통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건설협회,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회 등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 www.kofair.or.kr)
 - 중소기업중앙회 분쟁조정협의회(02-2124-3132, www.kbiz.or.kr)
 - 건설협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02-549-2105~6)
 - 전문건설협회 공정거래정책부(02-3284-1088)

